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4. 7.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평창군세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의 문란한 해석에 오해가 있을수 있고 개정 지방세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위원수 강화
- (2).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정비
- (3).형평성있는 지방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정비

나. 부과징수사무 자치권 강화

- (1).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
- (2). 납부고지서 직접송달하는 경우 군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3).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현금수납 할 수 있는 지방세 한계를 1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
- (4). 서류를 공시송달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다. 평창군세관련 개정

(1)주민세

- 가)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10,000분의3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도입
- 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그 부족분

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자동차세

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 개정

나) 승계취득한 자동차의 과세방법 추가(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3) 농업소득세

가) 농업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삭제하고 과세기간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농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토록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나) 농업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삭제

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신설

(4) 담배소비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5) 사업소득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2 절 납세자 권리 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군세에 관한 범칙 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고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군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다음의 각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세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2. 군세의 과세예고에 대한 심사청구
3. 군세의 비과세·감면신청의 반려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재무과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지역도시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중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군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④ 위원의 선출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준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부 과 징 수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고지서 송달) ①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 송달은 동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여 송달한다. 다만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하여 일반우편으로 고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고지번호, 세액, 고지일자등을 기록한 서류에 징수관의 결재를 득하고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③ 납세고지서를 교부방법으로 송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21호서식에 의거 평창군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1,0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단 현장에서 무선카드수납기로 수납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평창군이 정하는 게시판 및 평창군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8조(납세의무자) ①군동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의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군수

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 1일10,000분의3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일 10,000분의 3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서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년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시행규칙 제65조의 2제1항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2항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행규칙 제65조의2제3항의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하는 경우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것으로 본다.

제 2 절 재 산 세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전산대장포함)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재산세 과세대상 시가표준액은 결정일 60일전에 문서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매년 결정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제1목 내지 제2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제1목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평창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성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 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 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소액부징수)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자 동 차 세

제38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 n : 차령(2≤n≤12)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 재 정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 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본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본 세액의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 기본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 기본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법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42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제 4 절 주 행 세

제45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

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 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6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 한 경우에는 그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7조(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8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영 제146조의16 안부기준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절 농 업 소 득 세

제49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2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53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 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법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4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72만원 + 1,0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672만원 + 4,0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 + 8,0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55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농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세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시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제1항의 기간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절 담 배 소 비 세

제59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제60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1조(과세표준)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2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 담배

가. 제1종 쫄면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쫄면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쫄면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쫄면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6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64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4.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5. 영업개시일자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7. 기타 참고사항

제66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180조에 의거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이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3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9조(세액의 공제 및 환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제70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절 도 축 세

제71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7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제1항에 의한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제1항에 의한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73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특별징수의 절차)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도살한 소·돼지 수, 세액등을 기재, 시행규칙 제104조의 2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가산세) 균수는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도축세 납부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균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도축세 영수증서의 부분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절 종 합 토 지 세

제77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8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9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며 종합합산과세 표준·별도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 조의15 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4조의 1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세율) ①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 이라 한다) 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1억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제7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3억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6억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제79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 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과세표준액의 ·임야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과세표준액의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1,000분의 50
3. 제1호 내지 제2호 과세표준액의 외의 토지 1,000분의 3

제81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2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3조(부과징수방법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여하는 시행규칙 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5조(소액부징수)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6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 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중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중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88조(과세대상)①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다.

②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법 제180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다.

제89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90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5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6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 세 대 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16 ~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16일 ~10월 31일

제9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2 절 사 업 소 세

제99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100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

제101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2조(면세점) 영 제 212조에 의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영 제 213조에 의거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서 하여 군수에게 영제 213조에 의거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4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및 41조 또한 4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9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벽지등 지역

읍 . 면 명	지 역 명
평 창 읍	마지1.2리, 대상리, 대하리, 원당리, 뇌운리
미 탄 면	회동2리, 평안2리, 한탄리, 기화리, 마하리, 수청리
방 립 면	방림4리, 운교3리, 계촌2리
대 화 면	개수1.2리
봉 평 면	창동4리, 유포1·2·3리, 진조리, 면은1리, 무이1·2리, 흥정리, 덕거1·2리
용 평 면	이목정2리, 속사2리, 노동리, 도사리, 재산2리
진 부 면	수항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 봉산리
도 암 면	병내리, 유천3리, 수하리

끝.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①법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지방세법제51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세무공무원의 수납)영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77조의 2(신고 및 납부)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 233조의 7(가산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